

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·통일교육 활성화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김형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35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김형재, 김규남, 김길영,
김용호, 김재진, 김혜영,
김혜지, 남창진, 신동원,
옥재은, 윤종복, 이상욱,
이승복, 이종배, 이종태,
정지웅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초·중·고등학생 대상 ‘자유평화통일과 국가안보’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확대 필요성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“민족”을 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”으로, “의식 함양”을 “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”으로 규정함(안 제2조제1호)
- 나. 실효성 있는 평화·통일교육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·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에 관해 정비함(안 제4조제3항, 안 제5조)
- 다. 통일교육주간 기념 행사 실시를 규정함(안 제6조제2항제7호)
- 라. 「통일교육 지원법」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에 평화·통일교육 관련 토론회 및 강연회, 체육·문화 축제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통일교육 지원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·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·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 중 “민족”을 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”으로, “의식 함양”을 “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”으로 한다.

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교육감은 실효성 있는 평화·통일교육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·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 중 “평화·통일교육”을 “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·통일교육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평화·통일교육을”을 “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·통일교육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통일교육주간 기념 행사 실시

제14조제1항 중 “평화·통일교육 역량”을 “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·통일교육 역량”으로 한다.

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,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통일교육주간 기념 행사) 교육감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

에 평화·통일교육 관련 토론회 및 강연회, 체육·문화 축제 등의 다양한
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본이념) 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 “교육청”이라 한다)의 평화·통일교육은 「통일교육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의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념을 바탕으로 실시한다.</p> <p>1. 민족 공동체 <u>의식 함양</u>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제4조(교육감의 책무) ①·②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제5조(학교장의 책무) 학교장은 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<u>평화·통일교육</u>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시행계획 수립) ① 교육감</p>	<p>제2조(기본이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-----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</u>-----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교육감의 책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교육감은 실효성 있는 평화·통일교육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·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5조(학교장의 책무) ----- ----- ----- <u>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·통일교육</u>-----.</p> <p>제6조(시행계획 수립) ① -----</p>

은 평화·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‘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·통일교육 활성화 계획’(이하 ‘통일교육계획’이라 한다)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<신설>

7. (생략)

제14조(평화·통일교육 역량 강화) ① 교육감은 평화·통일교육 관련 각종 연수 활성화, 평화·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평화·통일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--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·통일교육 -----

② -----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통일교육주간 기념 행사 실시

8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제14조(평화·통일교육 역량 강화) ① -----

-----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·통일교육 역량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통일교육주간 기념 행사)

교육감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에 평화·통일교육 관련 토론회 및 강연회, 체육·문화 축제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5조 ~ 제18조 (생략)

제16조 ~ 제19조 (현행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)

문서번호

2023101100000028

미참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김형재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박지영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1.

회신일 : 2022.10.17.

내용문의 : 02-2180-7952

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·통일교육 활성화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참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참부 근거 규정
3. 미참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○ 통일교육주간 행사비 : 449,300천원

- 도서,교구,교재비 : 80,000천원 × 1식 × 5년 = 400,000천원

- 검토회의비 : [60천원 × 8명 × 5회 + 110천원 × 4명 × 5회] × 5년 = 23,000천원

※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, 전문가와 5급상당 장학사가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검토시 기준으로 계산

< 심사수당 지급단가 >

지급대상	지급액	
	기본료(2시간 미만)	초과
교수,전문가	80,000원	-2시간이상, 4시간 미만 : 30,000원 추가 -4시간이상 : 40,000원 추가
교감, 5급 상당 장학사(교육연구사), 교사, 6급이하, 일반인	40,000원	-2시간이상, 4시간 미만 : 10,000원 추가 -4시간이상 : 20,000원 추가

(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참조)

- 행사용품(물품) : 1,000천원 × 3식 × 5년 = 15,000천원

- 학교별 행사용품(액자 및 인쇄) : 12천원 × 80교 × 5년 = 4,800천원

- 전시회 설치비 : 500천원 × 1식 × 5년 = 2,500천원

- 업무추진비 : 20천원 × 20명 × 2회 × 5년 = 4,000천원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계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박지영

☎ 02-2180-7952

e-mail : 7magic7@seoul.go.kr

통일교육주간 학교 평화·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

『교실로 온(On) 평화통일』 운영 계획(안)

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

I. 근거 및 배경

-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(제7125호, 2019.5.16.)
-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(제7683호, 2020.9.24., 일부개정)
- 코로나19로 온·오프라인 학생 참여·활동 중심의 사제동행 평화통일 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함양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도모

II. 목적

- 학교의 자발적인 평화통일교육주간 운영으로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
- 온·오프라인 평화통일교육 체험활동 기회 확대를 통한 평화감수성 증진
- 학교별 특색 있는 콘텐츠 제공으로 공감대 확산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

III. 방침

- 학년, 팀(학년), 개별(학급, 동아리) 단위로 운영하되 한 학교에서 중복 지원 불가
- 운영 학교(팀 또는 개인)는 80교를 기준으로 하며, 신청 학교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체험활동 자료는 검토 위원을 위촉하여 [사진 검토→교육청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→의견수렴→활동 자료 확정] 등의 과정을 통하여 객관성, 공정성 확보
- 확정된 체험활동 자료 중 학교의 희망을 받아 교육청에서 제공
- 평화·통일교육주간 및 정규 교과와 연계하되,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운영
- 활동 후 온·오프라인 공유 마당을 통해 다양한 활동 사례 공유

- 운영 모든 단계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

IV. 세부 추진 계획

1. 운영 개요

- (운영 기간) 2022. 5. 23.(월) ~ 7. 22.(금)
 - ※ 세부일정(날짜, 시간, 횟수 등)은 운영 교사가 자유롭게 결정
- (대상) 초·중·고 희망교 중 80교 내외
- (내용) 통일교육주간(매년 5월 넷째 주) 전후 교과,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'통일', '평화' 를 주제로 하는 수업 또는 활동 실시

[예시]

- ① 평화통일교육주간 온·오프라인 체험 부스 운영
 - 도서, TED형태의 영상, 음악, 각종 이벤트 등 ※ 제8회 통일교육주간 온라인 프로그램 참고
- ② 교과 연계 평화·통일교육(교과시간에 평화·통일 관련 주제 또는 소재의 수업)
- ③ 평화통일 콘서트, 평화 신문 제작 등 도서 연계 동아리 활동
- ④ '평화', '통일'을 주제로 카드뉴스,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
- ⑤ (온라인) 가정과 연계한 '평화', '통일' 활동
- ⑥ 교구 및 활동 도구를 활용한 학생 중심 체험활동

- (방법)
 - 전체(학교), 팀(학년), 개별(학급) 등 희망에 따라 운영
 - 체험활동 자료를 활용할 활동 계획서를 첨부하여 담당 교사가 신청
 - 활동자료 수령 후 운영 횟수, 시간 등을 정하여 평화·통일교육활동 실시
 - 온·오프라인 사례나눔을 통한 활동 결과 공유

2. 활동 자료 신청 및 배부

- 희망 학교에서는 학생 평화통일 활동 자료의 활용범위(전교생, 학년별, 학급별)와 교육과정 운영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 후 신청
- 신청 학교 중 약 80교를 선정하여 학생 평화통일 체험활동 자료를 제공할 예정으로 학교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신청 여부 결정
- 활동 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수량을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신청 (교당 100만원 내외)
 - ※ 예산범위, 학습도구, 희망 학교 수에 따라 신청한 수량은 변동 또는 대체 될 수

있음.

V. 기대효과

- 평화통일교육 체험학습을 통한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
-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평화감수성 증진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
- 학교의 자발적인 평화통일교육주간 운영으로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

VI. 예산 사용 계획

- 총 예산: 금89,860,000원(팔천구백팔십육만원)
- 예산 항목: (정책)평화통일교육활동 (단위)남북교육교류사업 (세부)남북교육교류사업
- 예산 내용

구 분	산 출 내 역(원)		비고
도서, 교구, 교재비	80,000,000원×1식	80,000,000	자료, 배송비 등
기타 운영 수당	60,000원×8명×5회 110,000원×4명×5회	4,600,000	검토회의
행사용품(물품)	1,000,000원×3식	3,000,000	검토용
행사용품(액자)	10,000원×80교	800,000	공유마당 (전시회)
행사용품(인쇄비)	2,000원×80명	160,000	
설치비	500,000원×1식	500,000	
업무추진비	20,000원×20명×2회	800,000	
합 계		89,860,000	

※ 예산 집행액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